

(부의안건 요약서-참조3)

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1	성남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 ☐ 주요골자 ·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 ·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,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(안 제16조의2) · 토요일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전을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,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~2일 축소함(안 제13조, 제16조의2, 제18조) · 배우자의 출산시 휴가일수를 현행1일에서 3일로 확대함(안 별표3)	총 무 과	
2	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인구 90만 이상市(구를 설치한 市)의 시본청기구 설치기준이 5국 22과에서 6국 25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고, 행정자치부에서 시본청의 1국 3과 및 혁신분권 담당기구·정원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市에 두는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· 수정구 신흥2동사무소 이전 등 일부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	자치행정과	

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3	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주요골자 · 기구개편 가. 보건환경국 신설(안 제5조, 제9조) · 보건환경국에 두는 과 : 보건위생과,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 나.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서 환경위생과를 삭제함(안 제8조) 다. 도시주택국 소관부서에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하며 주택과·건축과를 주택과로 통합함(안 제10조) 라.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서 건설공사과를 신설함(안 제11조) 마. 국·과 명칭변경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) - 행정국 ⇒ 행정기획국 - 산업지원과 ⇒ 기업지원과 - 여성복지과 ⇒ 여성정책과 - 도 시 과 ⇒ 도시계획과 - 교통지도과 ⇒ 교통안전과 · 소속기관 소재지 변경 (안 제3조 별표) 가. 중원구청 : 성남동 109 → 성남동 3129 나. 수정구 신흥2동사무소 : 신흥동 1906 → 신흥동 1741-5 □ 제안이유 · 인구 90만 이상市(구를 설치한 市)의 시본청기구 설치기준이 5국 22과에서 6국 25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· 행정자치부에서 시본청의 1국 3과 및 혁신분권 담당기구·정원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	자치행정과	

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		□ 주요골자 ·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- 총 정원 : 2,204명 → 2,252명(증48명) - 집행기관의 정원 : 2,174명 → 2,222명(증48명) - 의회사무국의 정원 : 30명(변동없음) · 정원 승인 - 시본청 1국 3과 정원 : 45명 · 4급1, 5급3, 6급5, 7급이하 36 - 혁신분권 정원 : 3명 · 6급1, 7급2		